

다시또다시!
다시자랑스럽게!
RE:MAKE KNU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22. 5.



KNU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차 례

전형안내

1. 전형일정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3. 지원자격	5
4. 전형요소별 배점 및 최저학력 기준	11
5. 심층면접(면접구술고사)	11
6. 실기고사 과제 및 포트폴리오 심사	12
7. 선발방법	14
8. 전형료	15
9. 합격자 발표	16
10. 서류제출	17
11. 입학원서 접수 안내	19
12. 유의사항	20

지원서식

1. 입학원서	22
2. 수학기간 기록표	25
3. 해외 학교 학기 기록표	26
4. 사실 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27
5.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	29
6. 제 3국 수학사유서	30
7. 포트폴리오 서약서	31

부록

등록금 안내	32
학사제도 안내	33
생활관 안내	39
부서 및 학과(부) 전화번호 안내	41
캠퍼스 안내	44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22. 9. 13.(화) 09:00 ~ 9. 17.(토) 17:00 까지	http://ipsi.knu.ac.kr	인터넷으로만 접수
구비서류 제출			2022. 9. 13.(화) ~ 9. 30.(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입학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제출
지원자격심사 결과 발표			2022. 10. 21.(금) 15:00 ~	본교 입학홈페이지 (http://ipsi.knu.ac.kr)	
수험표 출력 및 고사장 안내			2022. 11. 2.(수) 10:00 ~	본교 입학홈페이지 (http://ipsi.knu.ac.kr)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실시			2022. 11. 4.(금) 10:00 ~		09:30분까지 입실완료
합격자 발표			2022. 11. 24.(목) 17:00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http://ipsi.knu.ac.kr) ※ 등록 방법 : 비고 참고	본교 입학 홈페이지 (http://ipsi.knu.ac.kr) 로그인 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버튼'클릭 ※ 기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방식을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방식으로 변경. 공지된 기간 내에 '합격자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 까지		
총원 합격자 발표	1차	총원합격자 발표	2022. 12. 20.(화) 17:00 예정		
		등록	2022. 12. 21.(수) 09:00 ~ 16:00 예정		
	2차	총원합격자 발표	2022. 12. 22.(목) 17:00 예정		
		등록	2022. 12. 23.(금) 10:00 ~ 12. 25.(일) 15:00 예정		
	3차 (최종)	총원합격자 발표	2022. 12. 26.(월) 17:00 예정		
		등록	2022. 12. 27.(화) 10:00 ~ 16:00 예정		
합격자 최종등록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 2. 9.(목) 16:00 까지	본교 지정 은행	공지되는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함

※ 위 일정은 입학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국외근무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인문대학	국 어 국 문 학 과	3	약간명	약간명
	영 어 영 문 학 과	6	"	"
	사 학 과	3	"	"
	철 학 과	2	"	"
	불 어 불 문 학 과	2	"	"
	독 어 독 문 학 과	2	"	"
	중 어 중 문 학 과	2	"	"
	고 고 인 류 학 과	2	"	"
	일 어 일 문 학 과	2	"	"
	한 문 학 과	2	"	"
	노 어 노 문 학 과	2	"	"
	정 치 외 교 학 과	2	"	"
사회과학 대학	사 회 학 과	2	"	"
	지 리 학 과	2	"	"
	문 헌 정 보 학 과	2	"	"
	심 리 학 과	2	"	"
	사 회 복 지 학 부	5	"	"
	미 디 어 커 뮤 니 케 이 셴 학 과	2	"	"
	수 학 과	3	"	"
자연과학 대학	물 리 학 과	5	"	"
	화 학 과	4	"	"
	생 명 과 학 부 (생 명 공 학 전 공)	8	"	"
	생 명 과 학 부 (생 물 학 전 공)	3	"	"
	통 계 학 과	3	"	"
	지 구 시 스 템 과 학 부	8	"	"
	경 제 통 상 학 부	13	"	"
경상대학	경 영 학 부	17	"	"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국외근무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공과대학	신 소 재 공 학 부	7	약간명	약간명
	기 계 공 학 부	12	"	"
	건 축 학 부 (건 축 학 전 공)	4	"	"
	건 축 학 부 (건 축 공 학 전 공)	4	"	"
	토 목 공 학 과	5	"	"
	고 분 자 공 학 과	4	"	"
	섬 유 시 스 템 공 학 과	3	"	"
	에 너 지 공 학 부	2	"	"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 용 생 명 과 학 부	5	"	"
	식 물 의 학 과	3	"	"
	식 품 공 학 부	9	"	"
	산 림 과 학 · 조 경 학 부	7	"	"
	원 예 과 학 과	3	"	"
	농 업 토 목 · 생 물 산 업 공 학 부	4	"	"
	바 이 오 섬 유 소 재 학 과	2	"	"
	식 품 자 원 경 제 학 과	2	"	"
예술대학	음 악 학 과	5	"	"
	국 악 학 과	2	"	"
	미 술 학 과	4	"	"
	디 자 인 학 과	2	"	"
생활과학 대학	아 동 학 부	4	"	"
	의 류 학 과	2	"	"
	식 품 영 양 학 과	2	"	"
간호대학	간 호 학 과	11	"	"
IT대학	전 자 공 학 부	30	"	"
	전 자 공 학 부 (인 공 지 능 전 공)	6	"	"
	컴 퓨 터 학 부	7	"	"
	컴 퓨 터 학 부 (인 공 지 능 컴 퓨 팅 전 공)	3	"	"
	컴 퓨 터 학 부 (글 로 벌 소 프 트 웨 어 융 합 전 공)	10	"	"
	전 기 공 학 과	6	"	"
행정학부		6	"	"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국외근무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생태 환경대학	산 림 생 태 보 호 학 과	2	약간명	약간명
	식 물 자 원 학 과	2	"	"
	곤 충 생 명 과 학 과	2	"	"
	관 광 학 과	2	"	"
	축 산 학 과	3	"	"
	동 물 생 명 공 학 과	2	"	"
	말 / 특 수 동 물 학 과	2	"	"
	체 육 학 과	4	"	"
과학 기술대학	건 설 방 재 공 학 과	3	"	"
	환 경 안 전 공 학 과	3	"	"
	정 밀 기 계 공 학 과	4	"	"
	자 동 차 공 학 부	5	"	"
	소 프 트 웨 어 학 과	4	"	"
	에 너 지 신 소 재 · 화 학 공 학 부	7	"	"
	식 품 외 식 산 업 학 과	5	"	"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섬유공학전공)	2	"	"
	위 치 정 보 시 스템 학 과	2	"	"
	스 마 트 플 랜 트 공 학 과	3	"	"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4	"	"

- ※ 1.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생태환경대학, 과학기술대학:**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에 위치,
 이외 다른 단과대학 및 학과(부):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에 위치

3. 지원자격

1.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국외근무자의 자녀(총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력 요 건	최저 해외 재학, 재직, 체류기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재직	거주	체류	거주	체류
국외근무자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3	3	3/4 이상	3	3	2/3 이상	3	2/3 이상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 이상의 국외에서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상세 자격 요건은 '2. 지원자격 관련기준 및 해설' 참고

나. 전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력 요 건
전 교육 과정 이 수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북 한 이 탈 주 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입학처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다. 참고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2) 부·모·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순수외국인특별전형(국제교류처 담당: 053.950.2434)으로 지원
- 3)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국적법」 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2011. 1. 1.부터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음

2. 지원자격 관련 기준 및 해설

□ 입학 허용기간

- 자격 및 학력 인정기준시점은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2023년 2월 28일)로 함.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고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2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8월에 3학년 1학기가 시작될 경우 2년 7개월 이내에서 허용). 다만,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
예) 2021년 3월(이전) 졸업자 : 지원불가, **2021년 4월 이후 졸업자 : 지원 가능**
-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 이수자 중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주민은 입학 허용기간 미적용

□ 국외근무자 및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

-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자/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국외에서 재직(현지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함
-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충족하여야 함

- 국외 파견 재직자의 범위

- 국외상사직원, 국외파견 공무원, 언론기관 특파원 등
- 선교사의 경우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법인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불가)과 해당 법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선교국 및 국외 파견기간 명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국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근무 및 주거문제 등의 사유로 출국이 늦어졌거나 조기귀국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국외 근무발령기간 전후 30일 이내에서 인정

- 현지 취업자의 범위

- 국외에서 직접 고용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취업자
- 외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 현지 자영업자의 범위

-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 재학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함(4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한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국외 체류 기간의 인정 기준

▷ **국외체류기간**: 학생은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이수기간의 3/4 이상이고, 부모는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체류하여야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 재학기간이 3년인 경우, 보호자는 학생이 해외에서 재학하는 마지막 학기(6학기)종료일 전에 귀국할 수 없음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재학 및 해외수학 연한 인정 기준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누락 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으로 인정함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나,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만 대체가능
- 학제 차이로 인한 국내와 외국학교 간 재학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 학기로 인정(누락 학기가 있을 경우, 누락 학기 보충이 우선 적용됨)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A	A	A	A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4-2로 G2-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국내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외국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재학 후, 외국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전형유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 13학년 학제의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전 교육과정 이수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 수

- 지역 간 학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수업연한 단축은 예외적으로 인정

□ 외국학교 인정기준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정규학교(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근무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함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인정기준(Q&A)

▶ CASE1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 학사일정 : G8(2017.8.1.~2018.6.23.), G9(2018.8.1.~2019.6.23.), G10(2019.8.1.~2020.6.23.)
- 재학기간 : G8(2017.8.1.~2018.6.23.), G9(2018.8.1.~2019.6.23.), G10(2019.8.1.~2020.6.23.)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기준) : 2017.8.1.~2020.7.31.
-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 학사일정표상 학사일정 종료일이 6. 23.을 확인함을 전제

»Question1

학생이 G10학기 수료 후 2020.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G10(2019.8.1.~2020.7.31.)동안 국외체류일수 3/4을 충족한 경우]

»Answer

충족

- 원칙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인정
G8(2017.8.1.~2018.7.31.), G9(2018.8.1.~2019.7.31.), G10(2019.8.1.~2020.7.31.)
 - 예외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 학생의 재학기간만 변경(축소)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및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Question2

국외근무자의 배우자가 2020.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단, G10(2019.8.1.~2020.7.31.)동안 국외체류일수 2/3을 충족한 경우]

»Answer

충족

»Question3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20.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G10(2019.8.1.~2020.7.31.)동안 국외체류일수 2/3을 충족한 경우]

»Answer

부적격(국외근무자의 경우 재직기간동안 국외 체류가 원칙이며, Q4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Question4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20. 7. 20.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G10(2019.8.1.~2020.7.31.)동안 국외체류일수 2/3을 충족한 경우]

»Answer

충족(근무 및 주거문제 등의 사유로 출국이 늦어졌거나 조기귀국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국외근무발령기간 전후 30일 이내에서 인정)

»Question5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17.6.25.~2020.6.24.인 경우(다른 조건은 위의 경우와 동일)
국외근무자(국외파견 재직자)가 2020. 6. 25. 귀국 시 지원자격 충족 여부

»Answer

충족

▶ CASE2 : 중간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 G8(2017.8.1.~2018.6.23.), G9(2018.8.1.~2019.6.23.), G10(2019.8.1.~2020.6.23.)
- 재학기간 : G8(2017.9.1.~2018.7.31.), G9(2018.8.1.~2019.7.31.), G10(2019.8.1.~2020.6.23.)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발령일기준) : 2017.9.1.~2020.8.31.
- *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동안 체류기간 충족 전제
-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Question1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Answer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G8 중간에 편입학하여 추가로 **G11 1개월 재학이 필요함**
G8(2017.9.1.~2018.6.23.), G9(2018.8.1.~2019.6.23.), G10(2019.8.1.~2020.6.23.), **G11(2020.8.1.~2020.8.31.)**

»Question2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국외 체류일수 산정기준

»Answer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체류
 - 1) G8(2017.9.1.~2018.8.31.), G9(2018.9.1.~2019.8.31.), G10(2019.9.1.~2020.8.31.)
 - 2) G8(2017.9.1.~2018.7.31.), G9(2018.8.1.~2019.7.31.), G10(2019.8.1.~2020.7.31.), **G11(2020.8.1.~2020.8.31.)**
⇒ G8과 G11, G9, G10을 각각 1개년(총 3년)으로 산정
- ※ 1) 또는 2) 중 국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하게 적용

4. 전형요소별 배점 및 최저학력 기준

1. 전형요소별 배점

모 집 단 위	지원자격 서류심사	심 층 면 접 (면접구술)		실기고사	포트폴리오 심사	합 계
		제1영역	제2영역			
일 반 학 과	합 / 불	20점	80점	-	-	100점
음 악 학 과 국 악 학 과 디 자 인 학 과		-	-	100점	-	100점
미 술 학 과		-	-	80점	20점	100점

2. 최저학력기준

- 일반학과 : 전형 총점의 60% 이상
- 음악학과, 미술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 실기고사 배점의 60% 이상

5. 심층면접 (면접구술고사)

고 사 내 용	배점	평 가 기 준	면 접 방 법
제1영역 (품성 및 표현력)	20점	- 품성과 태도 : 면접자세, 답변의 충실도 - 의사소통능력과 표현력 : 의사전달능력, 언어구사능력, 어휘의 사용 및 어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험생이 작성한 전공수행 기초능력 평가자료와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2영역 (전공수행 기초능력)	80점	- 전공관련지식 : 지원분야 전공수행을 위한 기초지식 - 문제해결능력 : 문제해심파악능력, 창의적 사고력과 지식을 문제나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 문제해결과정 의 논리성 등을 평가	
계	100점		

- 면접 전 1시간동안 전공수행 기초능력에 대한 면접구술고사자료(모집단위별 전공수행 기초능력 측정 자료로써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작성 후 면접 실시
-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 면접 진행 시 본인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구술위원 3인이 수험생 개인별 면접구술고사자료를 토대로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을 실시
작성한 면접구술고사자료 내용 및 심층면접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6. 실기고사 과제 및 포트폴리오 심사

1. 음악학과

전 공		과 제 곡	배점	고사시간
성 악		1. 이태리 가곡(자유곡) 1곡 2. 독일 가곡(자유곡) 1곡	100점	
피아노		1. F. Chopin Etude Op.10, Op.25 중에서 1곡 2. L. v. Beethoven Sonata 중에서 빠른 악장 한 악장 (반복 없이)	100점	
작 곡		1. 작곡실기 :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 형식의 피아노곡 쓰기	70점	180분
		2. 피아노실기 : 자유곡 1곡	30점	
관현악	현악	Concerto 중 빠른 악장 한 악장	100점	
	관악	Concerto 중 빠른 악장 한 악장 또는 자유곡 1곡	100점	
	타악	1. 팀파니 : 자유곡 1곡 2. 마림바 : 자유곡 1곡 3. 스네어드럼 : 자유곡 1곡	100점	

※ 유의사항

1. 모든 실기고사 과제곡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함
2. 반주자는 수험생이 동반하여야 함
3. 피아노와 타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는 수험생이 지참하여야 함
4. 문의처 : 음악학과 사무실(Tel. 053-950-5656)

2. 국악학과

전공		실기과제 및 곡명	배점	고사시간
기악	가야금 거문고	한국의 전통악기를 택하여 자유곡 1곡 연주	100점	
	대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			
성악	가곡 판소리 민요	한국의 전통성악곡 중 자유곡 1곡 연주	100점	
작 곡		화성풀이(부7화음까지)	100점	90분
이 론		국악개론(한국전통음악에 관한 기초 이론)	100점	90분

※ 유의사항

1. 모든 악기는 본인이 지참하며, 모든 실기고사 과제곡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함
2. 실기고사 시에 반주는 하지 않음
3. 문의처 : 국악학과 사무실(Tel. 053-950-5670)

3. 미술학과

전 공	과 제	수험생 준비물	화용지	배점	고사시간
한국화 서양화 조 소	드로잉	자유선택 (수험생 지참)	2절	80점	240분
	포트폴리오 심사	포트폴리오	-	20점	개인당 10분
계				100점	

※ 유의사항

1.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서약서(본교 소정양식 : 서식 4)와 함께 서류제출 마감일 17:00시까지 **본교 미술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시간 경과 시 접수 불가)
2.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10분 이내 발표
- 수험생이 발표용 자료 및 USB를 준비하여 발표함
3. 포트폴리오 규격은 A4 사이즈 10매로 함
4. 제출된 포트폴리오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미술학과 사무실(Tel. 053-950-5680)

4. 디자인학과

학과	과 제	수험생 준비물	화용지 (본교지급)	배점	고사시간
디자인학과	기초디자인	색채도구일체	4절도화지 (394×545mm)	100점	240분

※ 유의사항

1. 화용지는 학과에서 제공. 그 외 모든 준비물은 수험생이 지참하여야 함
2. 주제는 고사 당일 추첨을 통하여 이미지 2개 제공
3. 문의처 : 디자인학과사무실(053-950-5694)

7. 선발방법

1. 선발원칙

- 가. 지원자격 미달자, 구비서류 미제출자, 최저학력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 나. 입학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예술대학도 전공별 전형요소(실기고사 과제)에 관계없이 입학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2. 선발방법

- 가.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
 -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한 자는 전원 합격자로 선발함
- 나.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
 - 1)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 모두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자 모두를 모집단위별 후보자로 선발.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후보자 순으로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 2)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의 20% 범위(최대 선발가능인원의 20%가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내에서 전체 지원자의 총점순으로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총 입학정원의 2% 이내 여석)은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선발. 나머지 불합격 처리자가 아닌 자 모두를 후보자로 선발하고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순으로 모집단위별 최대선발가능인원까지 충원합격자로 선발함. 이 경우 후보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 다. 동점자 처리원칙
 - 1)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가) 일반학과
 - 1순위 : 심층면접(면접구술고사) 제2영역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 심층면접(면접구술고사) 제1영역 성적이 높은 자
 - 나) 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실기고사 성적이 높은 자
 - 다) 미술학과
 - 1순위 : 실기고사 성적이 높은 자
 - 2순위 : 포트폴리오 성적이 높은 자
 - 2) 선발대상인원이 총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심층면접(면접구술고사) 제2영역 성적이 높은 자

8. 전형료

1. 전형료

구분	전형료	환불금액
일반학과	60,000원	해당자 (30,000원)
음악학과, 국악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90,000원	해당자 (60,000원)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를 면제함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형료 반환

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반환함

- 지원자 중 지원서류 심사결과 탈락자 및 서류 미제출자 : 위 1. 전형료 표에 명시된 환불금액
-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결시자,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 서류 미제출자, 불가항력(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자: 전형료 전액
- ※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의 귀책사유, 타 대학과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며, 반환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다. 입학전형을 마친 후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함
라.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4항 및 제5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 제6항
-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을 받지 않음

9.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

구분	최초 합격자	충원 합격자		
		1차	2차	3차
합격자 발표	2022. 11. 24.(목) 17:00 예정	2022. 12. 20.(화) 17:00 예정	2022. 12. 22.(목) 17:00 예정	2022. 12. 26.(월) 17:00 예정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예정	2022. 12. 21.(수) 09:00 ~ 16:00 예정	2022. 12. 23.(금) 10:00 ~ 12. 25.(일) 15:00 예정	2022. 12. 27.(화) 10:00 ~ 16:00 예정
등록금 납부	2023. 2. 7.(화) 09:00 ~ 2. 9.(목) 16:0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에서 확인

2. 합격자 유의사항

- 가. 모든 지원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후보자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나. 합격자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된 안내사항(합격증 교부일시, 등록일시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3.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안내

최초 합격자	방법
2022. 12. 16.(금) 09:00 ~ 12. 19.(월) 16:00	① 입학홈페이지(http://ipsi.knu.ac.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문서 등록' 버튼 클릭 ② '온라인 문서 등록' 버튼 클릭 후 안내 사항에 따라 반드시 최종 완료 까지 실시 ③ 최종 완료 후 온라인 문서 등록 확인서 출력 후 보관

※ 충원 합격자는 위의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에 따라 진행

4. 등록 시 유의사항

- 가. 등록 안내(등록기간, 금액, 방법 등)는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하지 않음
- 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 완료 및 등록금을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처리함
- 다. '합격자 온라인 문서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등록금 납부기간에(2023. 2. 7. ~ 2. 9.)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처리함
- 라.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경우,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문서 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해야 함
- 마.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에 등록 포기를 해야 함
- 바.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이중 등록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동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5.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가. 신청절차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정보에서 등록 포기 신청 → 로그인(원서 접수 시 작성한 등록 포기 및 환불 신청 아이디/비밀번호) → 등록 포기 신청서 작성 → 저장 및 완료 → 등록금 환불
- 나. 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10. 서류제출

1.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구 분	국외근무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국외 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 입학원서(인터넷 접수후 출력)		○	○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수 학 기 간 기 록 표		○	○	○	○	○
○ 해외학교학기기록표		○	○	○	-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	○	○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	○	○	○	-
○ (학기 개시와 종료일 명기된)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 ¹⁾		○	○	○	○	-
○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 학생)		○	○	○	○ (학생)	-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	○	○ (학생)	-
○ 여권 사본(부모, 학생)		○	○	○	○ (학생)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	○	○	○ (학생)	-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²⁾	○	○	-	-
○ 국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사본 또는 국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 외환은행의 원본대조필 필수) ³⁾		○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외국정부 발행)		-	○	○	-	-
○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⁴⁾		-	○	-	-	-
○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개인 소득세 납부 영수증		-	-	○	-	-
○ 외국인등록증(부, 모, 학생) 및 가족관계증명서(호구부)		-	-	-	-	-
○ 국적취득사실증명서(또는 귀화허가 통지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주민만 해당)		-	-	-	○ (결혼이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발행)		-	-	-	-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	-	-	○
○ 학력인정증명서 (시·도 교육청 발급),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
○ 포트폴리오 및 서약서		미술학과 지원자만 제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미술학과 사무실로 제출)				

※ 위의 서류 외에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서<서식5>', '제3국 수학사유서<서식6>'는 해당자만 제출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를 제출

- 1) 재학한 학년도 자료가 없을 경우 최근 학제 일정 제출 가능, 홈페이지 출력물이나 브로셔 제출 가능
- 2) 해외파견 내용기재가 된 국내본사 발행 서류로, **해외 발령일 및 귀임발령(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함**. 선교사의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법인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선교국 및 파견기간 명시)** 및 해당 종교단체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된 **법인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불가)** 제출
- 3) 파견기간 이전에 수리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국 법인명과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나오는 파견국 법인명이 일치되어야 함(국내 은행권 발급 가능). 해외파견 공무원,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같이 본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4)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제출 가능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하며, 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나. 접수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대조가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하여 원본 대조 확인을 필하여야 함
- 라.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영어)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마.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p.16 제출서류>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클립, 집게 사용 가능)
- 바.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 사. 필요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주민센터 Fax 민원 및 인터넷 발급 가능)
 -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지원자의 해외 학업 개시일부터 조회하여 제출
- 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차.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 초·중·고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 및 발급. 다만,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학력인정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3. 제출기한 및 방법

- 가. 기한 : 2022. 9. 30.(금) 18:00까지
- 나. 제출처 : 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입학과 대학입학1팀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다. 방법 : **발송용 표지(접수완료 후 인터넷 출력)**를 붙인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제출
 - ※ 토·일요일 및 휴일,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음

4. 추가서류 제출 안내

-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 1) 제출대상 : 최종 합격 및 등록자에 한해 제출. 원서접수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재출한 자는 제출이 불필요함.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기재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 제출서류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다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재외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3) 제출방법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서 발급문의 :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7600)
- 나. 보호자의 지원자격 서류
 - 1) 제출대상 : 해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일까지 기간을 포함해야 보호자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원서접수 시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제출이 불필요함)
 - 2) 제출서류 : 보호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지원자격 서류
- 다. 제출기한 : 2023. 2. 24.(금)까지
- 라. 제출처 : 우)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입학과 대학입학1팀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 ※ 봉투 표지에 학과, 성명 및 '재외국민특별전형 추가서류제출' 기재

11. 입학원서 접수 안내

1. 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2. 접수기간 : 2022. 9. 13.(화) 09:00 ~ 9. 17.(토) 17:00
3. 접수 : <http://ipsi.knu.ac.kr>
4. 인터넷 원서 접수 절차
 - 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기존 회원은 곧바로 로그인)
 - 나. 경북대학교를 선택하고 접수 시 유의사항 숙지
 - 다. 지원자격 구분, 모집단위를 선택
 - 라. 입학원서 작성(입력)후 저장
 - 마. 전형료 결제방식(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 선택 후 전형료 결제
 - ※ 결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결제 전에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 바람
 - ※ 전형료 : 일반학과 60,000원, 예능계학과 90,000원
 - 북한이탈주민은 전형료를 면제함
 - 바. 결제 완료 후 지원서 및 접수증을 출력하여 확인
 - ※ 접수증이 발급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별도 확인할 필요 없음
 - 사. 우편발송용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붙인 후, 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넣어 등기우편(또는 택배, 직접 방문)으로 본교에 제출
5.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창구접수 및 우편접수는 시행하지 않음
 - 나. 1개 모집단위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
 - 다. 입력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사진을 입력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 또는 수험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입력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본인의 이미지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업로드
 - 마. 지원자 및 보호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입학전형 기간 중 등록 등에 대하여 신속히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바.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취소나 수정이 불가능함
 - 사.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함

12.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원서 허위작성, 제출서류 위·변조,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응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전형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우리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 수시모집에서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자는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 제외)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하여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됨**
- 수시모집(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함)에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모든 수험자격이 상실되며, 전형요소 중 어느 한 고사(과제)라도 불참할 경우에는 “결시”로 불합격 처리 함
-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 수집 및 이용항목 : 이름(보호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고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보호자 포함), 이메일, 해외수학 및 체류기간(보호자 포함), 환불계좌 등
 - 수집 및 이용목적 : 입학전형, 학사업무, 장학, 통계, 생활관생 선발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

제공받는 곳		제공정보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북대학교	대학본부 (학사과, 학생과, 재무과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추가)연락처,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고교명 등	학적부 생성, 학력 조회, 장학생 선발, 통계, 안내 문자 발송 등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단과대학 및 학과(부)	성명, (추가)연락처 등	안내 문자 발송 등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생활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성적 자료 등	생활관생 선발, 안내 문자 발송 등	
	외국어교육원	성명, 주소, (추가)연락처	어학 강좌 프로그램 안내	
	IT교육센터	성명, 주소, (추가)연락처	IT교육강좌 프로그램 안내	
제3자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내용(전형, 모집단위 등) 등	공동원서접수시스템 사용, 지원 및 등록위반자 확인	

아울러, 「공동원서접수시스템」 사용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원서접수 위탁을 실시함

수탁자(위탁대상자)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공동원서의 관리 및 전달 등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
-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라 입시관리를 위한 대학 기록물에 대하여 10년 보존
- 공유 및 제공 : 위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 관련법령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8조 등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
|--|

- 수험생은 고사 당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사시간에 대조·확인을 받아야 함
-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에도 각종 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실시하므로, 모든 수험생은 고사시간에 늦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 전형기간 중 수험생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홈페이지(<http://ipsi.knu.ac.kr>)에 게시 공고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합격여부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야 함
- 입시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및 긴급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본교 입학과 대학입학1팀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에 합격증과 등록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입학 후 첫 학기는 우리대학교 학칙에 의거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질병에 의한 휴학과 군입대 휴학은 가능함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처에서 결정함

【서식1】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
(앞면)

재외국민 대학 특별전형 원서

2023학년도				수험번호				
지원구분		신 입 학				지원자격구분		
지원사항		대학 학과(부) 전공				악기명 (분야)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사 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국적				
	출신고교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예정□, 졸업□)		고교 소재지 ()			
	출신대학	년 월 일	대학교 (□학년 수료□, 졸업□)		대학 소재지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연락처	국내	주소	□□□-□□□					
		전화			본인 휴대폰			
		e-mail			보호자 휴대폰			
		※ 가능한 연락번호 모두 기재 요망 -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연락처의 불분명 및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국외	주소						
		전화			휴대폰			
국외체류	관계	성명	수학/영주(근무)국가	해외 수학 / 영주(근무) 시기 (기간)		국적	근무처	직위
	지원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원서 접수시 입력한 지원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하여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수집된 정보는 입학전형, 학사업무, 장학, 통계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지원서 접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귀 대학에 지원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① 경북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시간 : 2022년 9월 00일 00시 00분 00초								

□ 전형료 반환

1.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함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 면접료, 실기고사료 반환

※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시전형(실기고사 등)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면접료, 실기고사료 반환
이 경우, '전형료 반환신청서' 및 '불가항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험생의 귀책사유, 타 대학과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2. 전형료 반환 사유, 금액 및 방법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르며, 반환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합당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음

3. 입학전형을 마친 후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있는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함

4.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4항 및 제5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2항 ~ 제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29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전형료 반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표

수험번호		
성명	한글	
	영어	
생년월일		
지원자격 구분		
지원학과(부)		
고사장	○○캠퍼스 건물명: (건물번호:) 호실:	
입실시간	2022년 11월 4일 9시 30분까지	
약기명(분야)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본 (3.5cm X 4.5cm)		

입학원서 접수증		
2023학년도		
	수험번호	
지원학과	대학	학과(부)
성명	한글	
	영어	
접수시간 2022년 9월 일 시 분 초 경북대학교 총장		접수자인
전형 일정 1. 지원자격심사결과발표 : 2022. 10. 21.(금) 본교 홈페이지 2. 고사장 안내 및 수험표 출력 : 2022. 11. 2.(수) 10:00 ~ 본교 홈페이지 3. 임시번호표 교부 : 2022. 11. 4.(금) 09:30 해당 고사장 4. 면접구술고사 및 실기고사 : 2022. 11. 4.(금) 10:00 ~ 5. 합격자 발표 : 2022. 11. 24.(목)예정 (본교 홈페이지)		

【서식2】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

수 학 기 간 기 록 표

수험번호	
지원학과(부)	
성명	
지원자격 구분	

1.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 (초등학교부터 연도별 순서에 의해 수학한 모든 학교를 기재)

[illegible]

※ 수학기간은 재학증명서 상의 기간을 기재함

2. 특이사항 (월반, 조기졸업,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만 아래의 표에 기재)

내 용	기 간	학년 / 학기	사 유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2년 양분 양분

지원자

(인 또는 서명)

【서식3】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

해 외 학 교 학 기 기 록 표

수험번호	
지원학과(부)	
성명	

학년	학교명	학기 시작 및 종료일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학년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학년제)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학교명: 반드시 공식 명칭을 기재하되, 해외 소재 중·고교만 기입함

※ 본인이 재학한 해외학교(중·고교)의 모든 학기를 기재(본인이 재학한 기간이 아닌 학교의 학기 및 종료일)

※ 3학기, 4학기의 경우 3학기제 혹은 4학기제 학교의 경우만 기입(2학기제 학교의 경우 3, 4학기란은 기재하지 않음)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연락처(전화, 휴대폰) 등의 개인정보는 대입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자격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식4】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If you apply for the certificate for yourself, you may submit ID card only, without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m.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 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and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서식5】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해당자만 제출)

지 원 자 격 미 충 족 사 유 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부)		지원자격 구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제출서류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 증빙자료 :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경북대학교총장 귀하

【서식6】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해당자만 제출)

제 3 국 수 학 사 유 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부)	
지원자격구분	

학생 재학국		보호자 근무국	
제3국 수학기간	년 월 일(학년 학기) ~ 년 월 일 (학년 학기)		

- ▶ 중·고교 기간 중에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수학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관련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십시오.

【서식7】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뒤 제출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포트폴리오 서 약 서

지원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지 원 전 공 :
연 락 처 :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요소인 포트폴리오는 틀림없이 본인의 작품을 사용하였으며, 타인의 작품을 인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경북대학교 미술학과장 귀하

1. 등록금(2022학년도 등록금 기준)

계열별	등록금(학기당)
자율전공부(인문계)	1,809,000원
자율전공부(자연계)	2,293,000원
인문대학/사범대학(인문계)/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생태환경대학(관광학과)	1,781,000원
인문대학 고고인류학과	1,828,500원
사회과학대학	1,819,000원
경상대학/행정학부	1,754,000원
자연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대학/사범대학(자연계,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생태환경대학/과학기술대학(식품외식산업학과)	2,179,000원
공과대학/IT대학/과학기술대학	2,331,000원
예술대학(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2,410,000원
예술대학(미술학과)	2,470,000원
간호대학	2,240,000원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2,344,000원
치과대학 치의예과	3,156,500원
의과대학 의예과	3,156,500원

※ 세부사항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행정 - 학사안내 - 등록 - 등록금표" 참고

2. 등록금 관련 안내

가. 합격자 유의사항

- 지정된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격을 취소함
※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합격자도 지정된 기한까지 등록금 납부 지정은행에서 등록하여야 함
[등록방법] ① 고지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수납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② 제납부금(학생회비, 학생의료공제회비, 동창회비)을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

나. 신입생 등록금 납부 확인방법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행정 - 학사안내 - 등록 - "등록금 납부확인서[신입생]" 클릭

다. 기타 등록금 납부 제도

- 1) 등록금 분할납부제: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에 2~4회 중 선택하여 납부가능
(입학 첫학기에는 신청 불가, 2학기부터 신청 가능)
- 2)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지정 수납카드(추후 등록금 납부 안내 시에 대상카드 안내)
(입학 첫학기에는 불가, 2학기부터 납부 가능)
- 3) 등록금 차등납부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 교육 - 학사행정 - 학사안내 - 등록]을 참고

1. 휴학

구분	신청기한	신청방법
일반휴학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내	학생 본인이 On-Line으로 신청 (홈페이지/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휴·복학신청)
육아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질병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군입대휴학	상시	
창업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	산학협력단 창업교육팀에 사전 상담 후 신청 -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중 1.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자 2.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3.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실적이 1억원 이상인 자

<유의사항>

-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단, 군 입대휴학, 질병휴학 제외
- 휴학기간: 6학기(약학과 8개 학기 제외)정 및 편입학자 3개 학기(약학과 제외)와 편입학자 6개 학기) 이내
※ 군입대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질병휴학 및 창업휴학은 각 4학기 간 추가로 휴학 가능, 육아휴학은 자녀당 4학기 휴학 가능
- 군복무로 인한 휴학 인정기간: 병역법 등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만 인정함
- 군 제대 복학은 전역 후 2개 학기(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는 제외)의 복학기간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 창업휴학의 경우 사전 상담(053-950-2378)을 통해 신청 자격 확인 후 해당위원회를 거쳐 창업휴학 승인

2. 복수전공

- ▶ 학생이 입학(소속)한 학과(부)의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 상주에서 대구로 복수전공 가능

가. 허용학과: 다음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 제외학과: 예술대학 · 사범대학 · 수의과대학 · 간호대학 · 약학대학 · 의과대학 · 치과대학 전학과,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글로벌인재학부(단, 사범대학 복수전공 이수 신청은 사범대학 학생 및 비 사범대학 학생으로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만 가능)

나. 지원자격: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다니고, 15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제외학생: 체육특기자 입학생,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및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및 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

다. 신청시기: 연 2회(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학생 본인이 On-Line으로 신청(홈페이지/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전공신청/복수전공신청)

마. 선발인원: 2학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각 대학(학과)별로 정한 인원

3. 연계전공

- ▶ 2개 이상의 학과(부, 전공)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제도
- ▶ 연계전공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에 한하여 선발

가. 연계전공: 통합사회교육전공, 통합과학사회교육전공, 기술.가정교육전공, 빅데이터전공, 건설IT전공, 핀테크전공, 미디어아트전공

나. 지원자격: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본전공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단, 편입생은 편입학한 후 이수한 학점이 소속 학과(부) 및 전공의 1학년 수료 학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제외학생: 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 학생,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 간호대학 학생, 약학대학 학생,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학생,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및 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

다. 신청시기: 연 2회(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마. 선발인원: 각 연계전공별로 주관학과(부)에서 정한 인원

4. 융합전공

- ▶ 2개 이상의 학과(부, 전공)가 연합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제도
- ▶ 전공별 선발기준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융합전공 주관학과(부)에 문의

가. 융합전공: 문화콘텐츠개발 융합전공, 중국문화와 통상 융합전공, 인문카운슬링 융합전공, IT정치 융합전공, 디지털정보관리 융합전공, 비즈니스인텔리전스 융합전공, 생물정보학 융합전공, 핵심과학 융합전공, 원예식품 융합전공, 심리정보 융합전공, 북방문화통상융합전공, 북한농업개발융합전공, 공간정보 융합전공

나. 지원자격: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본전공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제외학생: 의과대학·치과대학 학생,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 약학대학 학생,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학과 학생,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학생 및 졸업 마지막 학기 학생

다. 신청시기: 연 2회(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마. 선발인원: 각 융합전공별로 주관학과(부)에서 정한 인원

5. 전과

- ▶ 2학년 이상 학생이 동일 학년의 다른 학과(부)로 이동하여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가. 허용학과: 다음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 제외학과: 의예과, 의학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치위생학과, 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체육교육과, 모바일공학전공, 농산업학과, 글로벌인재학부, 자율전공부,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

※ 단, 사범대학은 학생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입 허용(단, 전출은 가능)

나. 지원자격: 2학년 이상 진급예정자 중 재학생 또는 복학 예정자(편입학자 포함)

다. 선발시기: 연 1회 (1월 ~ 2월)

라.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15%~20% 이내

6.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 ▶ 대학의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과 상호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매 학기 많은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우리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의 대학은 서울대학교와 거점 국립대학 8개교 등 총 28개교임

가. 신청자격: 수학희망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신청시기: 1학기는 1월경, 2학기는 7월경, 여름계절수업은 4월경, 겨울계절수업은 10월경

다. 학기당 신청 가능 학점: 우리 대학 학칙이 정한 범위 이내

※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소요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음

7. 비사범계학과의 교직과정 이수

- ▶ 사범대학을 제외한 비사범계 학과에도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학년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함

가. 선발시기 및 신청자격: 매 학년 초에 2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선발

나. 선발인원: 입학정원의 10% 이내

다. 교원자격증 발급

- 발급시기: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매 학기말(2월, 8월) 대학(원)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후, 본부 심사(학사과)에 의하여 자격증 발급함
- 무시험 검정요건: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교직과목 30학점(교과교육 8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통과[학기별 1회만 이수인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학기별 1회만 이수인정], 성인지교육 2회 이수[연 1회만 이수인정]여야 하며, 전공평균(교과교육 포함) 75점 이상, 교직평균(교과교육 제외)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 추후 교육부 법령 개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라.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발급: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복수전공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단, 부전공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인원

대학	학과(부)	전공	인원	표시 과목	대학	학과(부)	전공	인원	표시 과목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3	국어	공과 대학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	1	세라믹
	한문학과		2	한문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1	기계
	중어중문학과		1	중국어			기계설계학전공	2	기계
	영어영문학과		4	영어		응용화학과		1	화공
	불어불문학과		1	프랑스어		화학공학과		1	화공
	독어독문학과		2	독일어		토목공학과		1	건설
	일어일문학과		1	일본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	건설
	노어노문학과		2	러시아어			건축공학전공	1	건설
	사학과		2	역사		고분자공학과		1	화공
	철학과		1	철학		섬유시스템공학과		1	섬유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2	일반사회	IT 대학	환경공학과		1	환경
	지리학과		3	지리		전자공학부		9	전자
	심리학과		2	전문상담교사(2급)		전기공학과		2	전기
	문헌정보학과		3	사서교사(2급)		컴퓨터학부	플랫폼소프트웨어전공	3	정보·컴퓨터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3	수학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2	식물자원·조경
	통계학과		3	수학			임산공학전공	2	식물자원·조경
	물리학과		3	물리			조경학전공	1	식물자원·조경
	화학과		2	화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2	생물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3	생물			식물생명과학전공	1	식물자원·조경
	지구시스템과학부	지질학전공	3	지구과학		원예과학과		2	식물자원·조경
생활 과학 대학	아동학부	아동학전공	2	유치원정교사(2급)		농업·생물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	농공
	의류학과		2	의상		식품공학부	식품소재공학전공	1	식품가공
	식품영양학과		2	영양교사(2급)			식품생물공학전공	2	식품가공
간호 대학	간호학과		8	보건교사(2급)			식품응용공학전공	1	식품가공
예술 대학	음악학과		3	음악	생태 환경 대학	축산학과		1	동물자원
	미술학과		3	미술		동물생명공학과		1	동물자원
	국악학과		2	음악					
과학 기술 대학	식품외식산업학과		4	조리					
	섬유패션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3	의상					

※ 위 인원은 2022학년도 입학자 기준이며, 2023학년도 입학자에 대한 교직과정설치여부 및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8. 복수전공 이수자 교사자격 취득 제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가 사범대학인 경우는 입학정원의 50%~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비사범계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별도로 선발함

9. 학과(부) 전공 배정 안내

다음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부)별 일정 및 선발 기준에 따라 학과(부) 및 전공 배정을 실시 함

모집단위		배정 학과(부) 및 전공	배정인원
자율 전공부	인문사회자율전공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전 학과(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행정학부	해당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50% 이내(경상대학 경영학부, IT대학 전 학과(부)는 25%)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별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함
	자연과학자율전공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 제외), 생활과학대학, IT대학(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모바일공학전공 제외) 전 학과(부)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미시전공, 사회복지거시전공	
자연과학 대학	지구시스템과학부	지질학전공, 천문대기과학전공, 해양학전공	
행정학부		공공관리전공, 공공정책전공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전자재료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학전공	
	에너지공학부	신재생에너지전공, 에너지변환전공	
IT대학	컴퓨터학부 (플랫폼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과학전공)	플랫폼소프트웨어전공, 데이터과학전공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산림과학·조경학부	임학전공, 임산공학전공, 조경학전공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식품소재공학전공, 식품응용공학전공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생활과학 대학	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아동학전공	
과학기술 대학	자동차공학부	친환경자동차전공, 지능형자동차전공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에너지화학공학전공	

학과(부)별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정

※ 위 이외의 학과(부)는 단일 학과(부)이므로 별도의 전공 배정 없음

10.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시기

1학기: 2월 초순, 2학기: 8월 초순

나. 강좌별 수강제한 인원 지정

모든 강좌는 수강제한 인원을 지정하며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 순서에 따라 정함

다. 수강신청

(1) 수강신청 홈페이지주소: <https://lssrq.knu.ac.kr>

(2) 온라인으로 직접 수강신청

(3) 수강신청 결과 확인: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신청과목조회

※ 신청 오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강신청 후 반드시 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4) 신입생: 입학 첫 학기는 학과(부)별 시간표에 따라 일괄 수강신청 처리하며(학사과), 수강신청 과목 확인은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 **수강** → **수강신청** → 수강신청과목조회)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함

(5) 수강꾸러미 제도를 활용하여 수강할 과목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수강정원 초과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재신청 필요)

(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 시기별로 게시되는 수강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이수

(1) 학점을 취득한 과목 중 성적이 낮은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시 수강하는 것을 말하며, 재이수를 신청하면 이미 수강한 학점은 무효로 처리함

(2) 재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동일과목 또는 교육과정 개편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한 과목에 한함

(3) 재이수 과목에 대한 종전 성적의 삭제 기준

❖ 동일과목이 2과목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삭제하며, 성적이 동일한 경우 먼저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함. 단, 학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에 수강한 2개 이상의 동일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동일과목 인정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이 추후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할 수 있음

❖ 종전 과목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삭제함

(4) 재이수 제한

❖ 재이수시 취득학점은 B+까지만 부여 가능

❖ C+이하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수강신청 가능

❖ 한 학기 6학점 이내 재이수 신청 가능

마. 수강변경 신청

수강신청과목 조회 결과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강변경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함

바. 수강신청 불인정

(1)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

(2)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교과목 번호가 낮은 1과목만 인정하고 높은 1과목은 수강 신청을 무효 처리)

(3) 수강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 중 맨 마지막 과목

사. 수강신청 확정: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는 수강 신청·변경은 불가능함

□ 생활관

문의: 생활관(대구소재) 053-950-6681~2
생활관(상주소재) 054-530-1666

[대구소재]

1. 시설별 정원

건물명	실형태	실수	성별	정원(명)	배정 대상자
재정 생활관 (직영)	성실관(A동)	1실 2인	남	266	학부생
	봉사관(D동)	1실 1인	남	3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생
		1실 2인	남	178	
		1실 3인	남	12	
	진리관(E동)	1실 2인	남	152	학부생
		1실 3인	남	12	
	화목관(FU동)	1실 2인	여	244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생
	화목관(FS동)	1실 2인	여	80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생
	면학관(G동)	1실 1인	남·여	25	외국인생
BTL 생활관 (민영)	향토관(H동)	1실 2인	남·여	716	기금 출연 지방자치단체 추천 학부생
	첨성관(I동)	1실 2인	남·여	1,360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생
	명익관(J동)	1실 1인	남·여	92	(의과·치과·간호대학)학부생, 대학원생,
		1실 2인	남·여	240	외국인생
	누리관(K동)	1실 1인	남·여	9	대학원생(기혼자)
			남·여	7	(장애학생)학부생, 대학원생
		1실 2인	남·여	1,178	학부생, 대학원생
	계	2,351		4,574	

2. 생활관비 안내

(단위: 원)

건물명	실형태	관리비	공공요금	식비	계	비고
재정생활관(향토관 제외)	1실 2인	536,700	-	-	536,700	- 관리비 115일
향토관, 첨성관	1실 2인	602,300	-	825,790	602,300	- 식비 1일3식 기준
누리관	1실 2인	560,900	120,000	825,790	680,900	- 누리관은 공공요금 별도 부과

※ 2022학년도 2학기 기준이며, 식수 선택 유형에 따라 식비가 달라질 수 있음. 재정생활관은 식당 운영 없음에 유의

3. 생활관생 모집

가. 신입생 선발인원: 신입생(수시) 선발정원: 653명*(남학생 364명, 여학생 289명)

* 2022학년도 본교 수시모집 합격자의 생활관 선발정원이며 2023학년도에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자격: 본교 대구캠퍼스 학부 신입생 중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제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예외)인 경우(단, 모바일공학 전공생, 신입생 도전장학생 및 KNU+인재장학생은 예외), 전염성 질환자 등

라. 우선 선발 대상자: 신입생 KNU+인재장학생, 신입생 도전장학생, 모바일공학전공생, 체육특기생, 장애학생, 국가유공자(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녀), 자립준비청년, 해외교포 자녀, 실직자 자녀, 본교 학생 중 형제·자매·남매(형제·자매가 모두 생활관에 지원하여야 함),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마. 입주신청

1) 모집공고: 2023. 1월 초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knu.ac.kr>)에 공고(예정)

2) 신청기간: 2023. 2. 7.(화)~2. 9.(목)(예정) 인터넷 접수

3) 신청방법: 등록금 납부 후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에 회원가입 및 신청

바. 선발방법

1) 모집 단위별(학과 또는 학부) 입학 성적 석차백분율 우선 순으로 선발

2) 우선 선발 대상자는 자격심사 통과 시, 성적에 관계 없이 우선 선발

3) 향토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모집

사. 유의사항: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활관 홈페이지 관련 공고 확인 요망

[상주소재]

1. 시설별 정원

건물명	실 형태	정원(명)	배정 대상자
자주관	4인 1실	213	학부 남학생(장애인실 포함)
창조관	2인 1실	181	학부 남학생(장애인실 포함)
근면관	2인 1실	112	학부 여학생(장애인실 포함)
경애관	4인 1실	285	학부 남학생(장애인실 포함)
노악관	2인 1실	314	학부·대학원·외국인 여학생(장애인실 포함)
청운관	2인 1실	195	학부·대학원·외국인 남학생(장애인실 포함)
계		1,300	

2. 생활관비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가. 관리비

자주관	창조관	근면관	경애관	노악관	청운관
344,700원	440,300원	528,100원	440,300원	600,400원	600,400원

나. 식비 : 선택식, 0식 선택 가능

구분	1일 1식	1일 2식	1일 3식
단가	3,700원	3,300원	2,700원
총 식수	113식	226식	339식
합계	418,100원	745,800원	915,300원

3. 생활관생 모집

가. 신입생 선발인원: 650명(남학생 437명, 여학생 213명) 예정

나. 우선선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장애인, 실직자의 자녀, 교포자녀, 경북대 학생 중 형제관계인 자, 체육특기생, 학군사관후보생, 신입생 KNU+ 인재장학생, 신입생 도전장학생, 기타 특이자

다. 입주신청

1) 모집공고: 2023. 1월 중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knu.ac.kr/scdorm>) 공고 예정

2) 신청기간: 2023. 2. 7.(화) ~ 2. 9.(목)(예정)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온라인 접수

라. 선발방법: 모집단위별(학과 또는 학부) 입학성적 석차백분율 순으로 선발하며, 전염성질환보균자는 입주불가, 우선선발대상자는 기간 내 지정된 별도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등록가능

마. 유의사항: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활관 홈페이지 관련 공고 확인 요망

□ 부서 및 학과(부) 전화번호

■ 주요부서

구분	담당부서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휴학, 복수전공 등 학사안내	교무처 학사과	108	950-2053~4
생활관 입사안내	생활관 행정실(대구소재)	501	950-6681~2
	생활관 행정실(상주소재)	14	054-530-1666
장학금, 학자금 대출 안내	학생처 학생과	108	950-2103~7
등록금 수납, 환불 안내	사무국 재무과	108	950-2623~5

■ 대학 각 부서: 학사행정 문의

구분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대 406호	104	950-5106
	영어영문학과		대학원동 514호	107	950-5120
	사학과		대학원동 419호		950-5135
	철학과		인문대 410호	104	950-5148
	불어불문학과		대학원동 417호	107	950-5159
	독어독문학과		대학원동 418호		950-5169
	중어중문학과		대학원동 402호		950-5178
	고고인류학과		대학원동 518호		950-5186
	일어일문학과		대학원동 415호		950-6150
	한문학과		대학원동 404호		950-6160
	노어노문학과		대학원동 210호		950-6170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대 506호		310
	사회학과		사회대 414호	950-5218	
	지리학과		사회대 412호	950-5227	
	문헌정보학과		사회대 408호	950-5236	
	심리학과		사회대 209호	950-5244	
	사회복지학부		사회대 210호	950-525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대 406호	950-5259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자연대 304호	209	950-5306
	물리학과		제1과학관 101호	208	950-5316
	화학과		화학관 207호	407	950-5329
	지구시스템과학부		제2과학관 113호	210	950-5354
	통계학과		자연대 404호	209	950-5364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생물학관 215호	217	950-5342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관 205호	207	950-6349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경상관 105호	309	950-5406
	경영학부		국제경상관 317호		950-5439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공대3호관 311호	409	950-5569
	응용화학과		공대1호관 213호	404	950-5581
	화학공학과		공대9호관 101호	406	950-5615
	신소재공학부	금속신소재공학전공	공대3호관 509호	409	950-5559
		전자재료공학전공	공대8호관 215호	419	950-5631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대2호관 316호	401	950-5590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과		공대2호관 216호	406	950-5607
	고분자공학과		공대9호관 119호		950-5623
	섬유시스템공학과		공대1호관 315호	404	950-5638
	환경공학과		공대6호관 313호	410	950-6580
	에너지공학부		공대7호관 209호	411	950-8970

■ 대학 각 부서: 학사행정 문의

구분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3)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농생대4호관 207호	125	950-5706
		환경생명화학전공	농생대1호관 405호	201	950-5714
	식물의학과		농생대2호관 209호	203	950-5758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202호	202	950-5772
		식품소재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328호		950-5750
		식품응용공학전공	농생대2호관 410-1호	203	950-7761
	산림과학 · 조경학부	임학전공	농생대1호관 416호	201	950-5744
		임산공학전공	농생대3호관 403호	202	950-5795
		조경학전공	농생대1호관 506호	201	950-5779
	농업토목 · 생물산업공학부	농업토목공학전공	농생대2호관 106호	203	950-5730
		생물산업 기계공학전공	농생대4호관 603호	125	950-5790
	원예학과		농생대4호관 409호	125	950-5721
	식품자원경제학과		농생대4호관 807호	125	950-5765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농생대2호관 309호	203	950-5737
농산업학과		친환경농업교육센터317호	-	950-8537	
자율전공	인문사회자율전공		글로벌플라자 513호	103	950-4089
	자연과학자율전공		글로벌플라자 513호		950-4089
행정학부			법학전문대학원(구관) 113호	311	950-5474
예술대학	음악학과		예술대학 302호	120	950-5656
	국악학과		예술대학 405호		950-5670
	미술학과		조형관 105호	119	950-5680
	디자인학과		조형관 104-1호		950-5694
사범대학	교육학과		사범대학 823호	301	950-5806
	국어교육과		사범대학 623호		950-5821
	영어교육과		사범대학 521호		950-5829
	독어교육전공		사범대학 512호		950-5836
	불어교육전공		사범대학 522호		950-5842
	역사교육과		사범대학 722호		950-5848
	지리교육과		사범대학 721호		950-5856
	일반사회교육과		사범대학 824호		950-5862
	윤리교육과		사범대학 712호	301	950-5868
	수학교육과		자연대 103-1호	209	950-5882
	물리교육과		제1과학관 301호	208	950-5891
	화학교육과		화학관 421호	407	950-5900
	생물교육과		생물학관 117호	217	950-5909
	지구과학교육과		제2과학관 125호	210	950-5916
	가정교육과		사범대학 622호	301	950-5923
	체육교육과		제1체육관 104호	213	950-5930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생활과학대학 214호	307	950-6210
	의류학과		생활과학대학 313호		950-6220
	식품영양학과		생활과학대학 115호		950-6230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대신관 1층 129호	-	420-4937
IT대학	전자공학부		IT대학1호관 409호	418	950-5506
	컴퓨터학부	IT융복합관 317호	415	950-6509	
		IT융복합관 413호		950-5600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IT대학2호관 305호	416	950-6571
의과대학	의예과		의과대 행정실	-	420-4911
치과대학	치의예과		치과대 행정실	-	660-6803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수의대 206호	420	950-5956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대 행정실	118	950-3683

■ 대학 각 부서: 학사행정 문의

구분		위치	건물번호	전화번호(지역번호: 054)
생태환경대학	산림생태보호학과	6호관 417호	06	530-1240
	식물자원학과	6호관 112호	06	530-1200
	곤충생명과학과	6호관 216호	06	530-1210
	관광학과	본관 207호	04	530-1380
	체육학과	1호관 209호	01	530-1430
	축산학과	6호관 323호	06	530-1220
	동물생명공학과	6호관 426호		530-1940
	말/특수동물학과	6호관 327호		530-1950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과	7호관 210호	07	530-1250
	건설환경공학전공	5호관 112호	05	530-1440
	정밀기계공학과	7호관 304호	07	530-1270
	자동차공학부	2호관 305호	02	530-1400
	친환경자동차전공			
	지능형자동차전공	2호관 304호		
	소프트웨어학과	5호관 211호	05	530-1450
	에너지 신소재·화학공학부	2호관 104호	02	530-1410
	신소재공학전공			
	에너지화학전공	7호관 418호	07	530-1330
	식품외식산업학과	9호관 213호	09	530-1300
	섬유패션디자인학부	8호관 213호	08	530-1280
	섬유공학전공			
	패션디자인전공	9호관 311호	09	530-1310
	위치정보시스템학과	8호관 311호	08	530-1490
	스마트플랜트공학과	9호관 413호	09	530-1480
	치위생학과	3호관 301호	03	530-1420

경북대학교 캠퍼스 안내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1

- 100 본관
- 101 대강당
- 102 DGB문화센터
- 103 글로벌프라자
- 104 인문대학
- 105 영선동
- 106 인문한국진흥관
- 107 대학원동
- 108 청성인미래관
- 109 도서관 휴게실
- 110 정보화본부
- 111 중앙도서관
- 112 언어교육센터
- 113 향토관
- 114 청성관
- 115 IT융합산업빌딩
- 116 종합정보센터
- 117 융합학부(테크노빌딩)
- 118 약학대학
- 119 조형관
- 120 예술대학
- 121 조소동
- 122 문예관
- 123 차고
- 125 농생대4호관

2

- 201 농생대1호관
- 202 농생대3호관
- 203 농생대2호관
- 204 출판부
- 205 복원회관
- 206 어린이집
- 207 생명공학관
- 208 제1과학관
- 209 자연과학대학
- 210 제2과학관
- 211 국민체육센터
- 212 제2체육관
- 213 제1체육관
- 214 청룡관
- 215 제1학생회관(백호관)
- 216 학군단
- 217 생물학관
- 218 공동실험실습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 301 사범대학
- 302 교육대학원
- 303 우당교육관
- 304 제4합동강의동
- 305 복지관
- 306 박물관
- 307 생활과학대학
- 308 경상대학
- 309 국제경상관
- 310 사회과학대학
- 311 법학전문대학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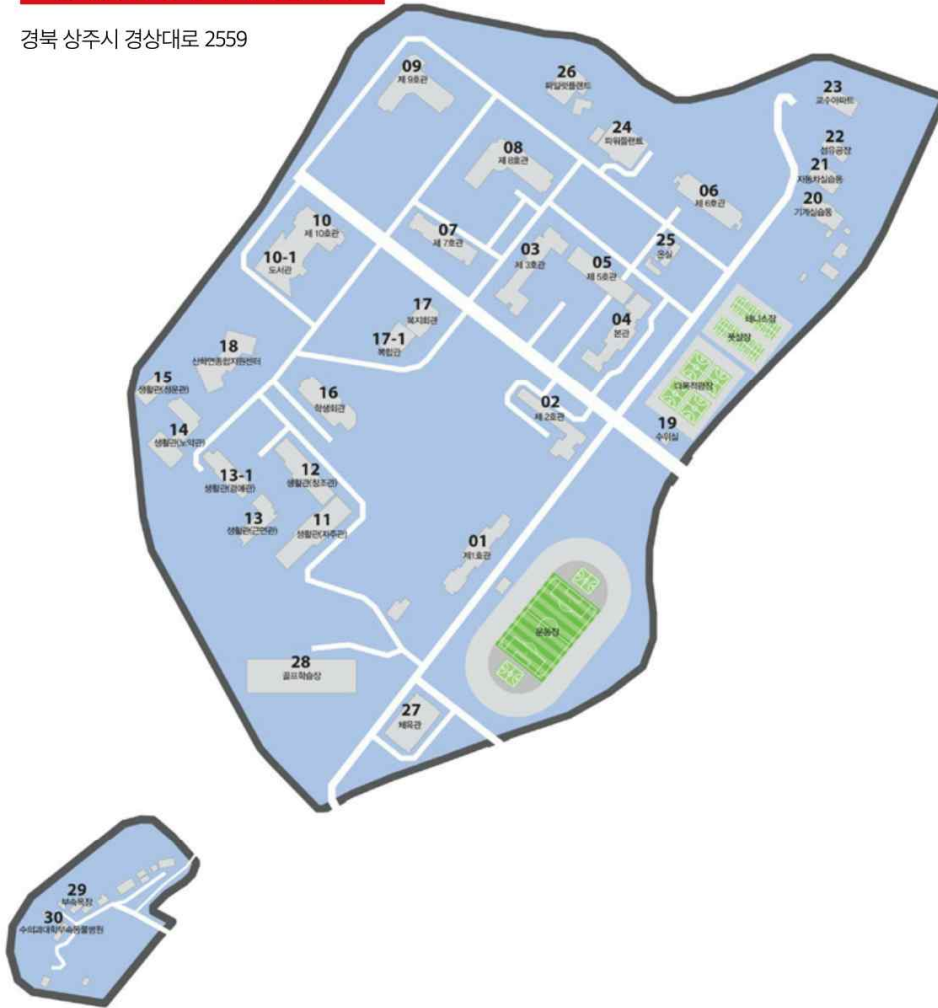
- 401 공대2호관
- 402 공대2A호관
- 403 P/P구조실습실
- 404 공대1호관
- 405 연구실안전관리센터
- 406 공대9호관
- 407 화학관
- 408 공대12호관
- 409 공대3호관
- 410 공대6호관
- 411 공대7호관
- 412 미래창직관(신축중)
- 413 IT대학3호관
- 414 IT대학4호관
- 415 IT대학융복합공학관
- 416 IT대학2호관
- 417 반도체연구동
- 418 IT대학1호관
- 419 공대8호관
- 420 수의과대학
- 421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

5

- 501 진리관
- 502 봉사관
- 503 화목관
- 506 면학관
- 507 성실관
- 508 보람관(신축중)
- 509 교수아파트
- 510 번전소
- 511 창업보육센터

생태환경대학/과학기술대학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59



- 01 제1호관
- 02 제2호관
- 03 제3호관
- 04 본관
- 05 제5호관
- 06 제6호관
- 07 제7호관
- 08 제8호관
- 09 제9호관
- 10 제10호관
- 10-1 도서관
- 11 생활관(자주관)
- 12 생활관(창조관)
- 13 생활관(근면관)
- 13-1 생활관(경애관)
- 14 생활관(노악관)
- 15 생활관(청운관)
- 16 학생회관
- 17 복지회관
- 17-1 복합관
- 18 산학연중합지원센터
- 19 수위실
- 20 기계실습동
- 21 자동차실습동
- 22 섬유공장
- 23 교수아파트
- 24 파워플랜트
- 25 온실
- 26 파일럿플랜트
- 27 체육관
- 28 골프학습장
- 29 부속목장
- 30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

의과대학/간호대학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80



- 1 원장실
- 2 행정실
- 3 도서관의학분관
- 4 중앙강당
- 5 제1교수회의실
- 6 제2교수회의실
- 7 의예 2학 강의실
- 8 의예 1학 강의실
- 9 간호대학
- 10 대학강의실
- 11 대학강의실
- 12 해부실습실
- 13 기능학습실
- 14 형태학실습실
- 15 간호대
- 16 간호대
- 17 보건대학강의실
- 18 공용기기실
- 20 실험동물지원관리센터
- 21 학생회관
- 22 간호대
- 23 테니스장
- 24 수위실

치과대학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7



- 1 경북대학치과병원
- 2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